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98 발의연월일: 2021. 1. 6.

발 의 자:이광재·장철민·강훈식

강병원 · 송재호 · 위성곤

김경만ㆍ허 영ㆍ김승원

신현영 · 오영환 · 강득구

정태호 · 홍성국 · 윤건영

윤영덕 • 이규민 • 유정주

양향자 • 조승래 • 유영찬

이낙연 의원(2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 적으로 보전 및 이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교육문화, 사회 경제, 행정 등 각 분야의 방대한 국가지식정보를 꾸준히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 왔음.

또한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는 비대면을 기본으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본격 돌입하였으며, 특히 교육 부분에서 디지털화된 국가지식정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식정보가 기관이나 분야별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고,

민간과의 연계도 부족하여 국민의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지식 기반의 혁신서비스 창출도 미약한 상황임.

이에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 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 1) 이 법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 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국가기관등", "디지털화",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등 핵심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안 제2장)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2)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를 보유·제공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을 지식정보센터 로 지정하고 분야별 국가지식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12조).

다.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안 제3장)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플 랫폼과의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사업자 등을 통해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의 지식정보를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라. 보칙(안 제4장)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2)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관계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 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3)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 단체 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그 조정을 요청할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2. "디지털화"란 광(光) 또는 전자적 외의 방식으로 표현된 정보를 보존 및 이용에서 그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인 형태로 변 환하는 것을 말한다.
- 3. "국가지식정보"란 국가기관등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 4. "통합 플랫폼"이란 국가지식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국민에게 정

보통신망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 및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가기관등은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발전시킬 것
 - 2. 국가기관등은 국민에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
 - 3.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협력을 강화할 것
 - 4.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시 특정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 5.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 활용시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지식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 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국가 지식정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의 기본방향·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 2.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3.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4. 국가지식정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 보에 관한 사항
 - 5. 국가지식정보의 운영실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① 국가지식정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지식정보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 · 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 3. 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5.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등의 협의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지원
 - 2.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 3. 통합 플랫폼의 구축 운영에 관한 지원
- 4.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식정보를 보유·제공 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을 지식정보센터로 지정하고 분야별 국가지식 정보를 연계 및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센터(이하 "지식정보센터"라 한다) 는 국가기관등이 생산·보유·관리하는 국가지식정보가 통합 플랫 폼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수집, 관리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하여 지식정보센터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정보센터 등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 제13조(통합 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 플랫폼과 의 연계대상이 되는 국가지식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활용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절차, 제2항에 따른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활용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위하여 통합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합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 플랫폼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통합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현황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보 유 현황 및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 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① 국가기관등은 국민의 국가지 식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 식정보의 생산·연계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 야 한다.
 - ②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민간과의 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국가지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지식정보 중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정보를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정보의 제공, 제2항에 따른 민간지식정보의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가지식정보 중에 디지털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 등을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관계 국가기관등의 협의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지식 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하여 관계 국가기관등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 후 그 조정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국가기관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분쟁의 조정) ①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 단체 등은 국가지식 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위 원회에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저 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기관등(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한다)을 대상으로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 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교육 및 포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 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